



( : )  
[ 2019. 1. 1.] [ 29421 , 2018. 12. 24., ]  
( ) 044 - 200 - 7704

1

1 ( ) 「 」

2 ( ) 「 」

( " " ) 3 2 ( " " )

1. 2 1 「 . 」, 「 」, 「 」
2. 2 1 「 」 2 12

1. , , , .
2. .
3. . .
- 4.

1

1

2

3 ( ) 7 2 ( . )

1. 가. , , , .
2. 가. : , , :가 . :가 , .

- 3.
4. ,
5. ( )

4 ( ) 7 2

1. 3

2.

3.

7 2 가 1 1

5 ( ) 7 2

1. 가 :

2. :

3. :

6 ( ) 7 2

10

1

1.

2. 가 가

7 ( ) 7 4 1 , 2 4

7 4 3

7 4 4 "

"

1.

2.

8 ( ) 7 6 ,

3

7 6

4

9 ( ) 7 6 ,

( " " ) ,

1.

가. 가 :

:

2.

가. 가 :

:

10 ( ) 7 6 ,

6

11 ( ) 7 6

3

7 6

가

4

12 ( ) 7 6  
( 4 2 ) 60 4

1

- 1. 가 :
- 2. 「 」 가 :
- 3. 1 2 :

7 6 가

- 1. 1 가
- 2. 14 1 가
- 1 3 4 1

13 ( • ) , , 12 1 3

1 5 , ,  
9 .

10 , , 3

- 1.
- 2. 가 가

14 ( ) , , , 5 , 9 , 12

13

- 1.
- 2. 가 4 2
- 3. 가

4. 가

5. 가

6.

1

15 ( ) 7 7

- 1. 5 1 가
- 2. 6
- 3. 가

7 7

- 1. . .
- 2. 7 4 , 16 21
- 3.

16 ( . ) 7 8 3 , 4 1  
 , 5 , 7 13 1 , , 26 .  
 「 」 가 가  
 1 가 가

3

17 ( . 가 ) 8 3 2 "  
 가 " 1 .

18 ( ) 9 1 .

- 1. 가. , , , .
- 2. 가. : , , , .

. :가 .  
 . :가 , .

- 3.
- 4. 가
- 5.
- 6. ( )

19 ( ) 9 1 4 .  
 9 1 5 .  
 6

16

20 ( ) 9 6 , 18

, 9 6  
4  
, 9 6  
9 6 6 , 9

21 ( ) 9 6 18

가 9 6  
4  
가 9 6  
12

22 ( ) , , 21 3 12  
1 3  
13

23 ( ) , , , 가  
14

24 ( ) , , , 9 2  
6 21 3 12 1  
3 9 6 1  
9 2 , 6 2 , ,  
, , ,  
2 3 , .

25 ( 가 ) 10 1 " " 2

26 ( ) 10 2 1 ( " " )  
< 2018.

1. 17.>

1. , ,

2. ,  
3.

4. ( )

5. ( ),

1

5

.< 2018. 1. 17.>

27 ( ) 10 1 ( "  
" ) 10 5 2

1. 26 1

2.

1

7

2

( 가

)

28 ( • ) 가 9 2 6  
10 5

4

29 ( ) 13 1 가 가 , , , ( "  
" )

1.

가. , , ,

2.

가. : , ,

. :가

. • , , :가 , •

3.

4. 가 ,

5. ( )

30 ( ) 13 1

1. 29

2.

3.

4. 가 ( " " )

1 4

13 1 가 1 1

31 ( ) 13 1  
, 5 , 6 9

32 ( ) 13 1  
, 30

33 ( ) 13 1  
( 30 3 ) 60

30 1

1. 가 :

2. 「 」 가 :

3. 1 2 :

, ,

13 1 가

1. 1 가

2. 14 1 가

( 가 1 3 ) 30 1

34 2

34 ( • ) 33 1 3

1. 가. 가 :

. :

. :

2. 가. 가 :

. :

3. 가. 가 :

10

( 가 )

2

1.

2.

가

가

35 ( )  
14

가

36 ( )  
3 4

14 5  
7

14 5

30

2

14 7

37 ( )  
10

가

38 ( ) 가

39 ( )

1. 7 7

2. 7 , 9 14

3. 40

4.

1

40 ( )  
가

15 5

1

가

1

1

41 ( )

12

12

1



42 ( )

19 1

1

19 1

1

< 2018. 1.

17.>

19 3

43 ( )

21

44 ( )

가 「

」 23

, 19 1 , 2 4

가

- 1. 7 9
- 2. 10
- 3. 13 14
- 4. 15
- 5. 17

45 <2018. 12. 24.>

< 27490 ,2016. 9. 8.>

2016 9 28

< 28590 ,2018. 1. 17.>

1 ( )

2 ( 가 ) 1

3 ( ) 2

< 29421 ,2018. 12. 24.> (

57

)

2019 1 1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